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38호(號) 1928(昭和 3)년 2월 17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특정(特定)함.

1926(大正 15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05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運賃)은 1928(昭和 3)년 2월 18일까지 이것을 폐지(廢止)함.

1928(昭和 3)년 2월 1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- 1 품 명(品 名) 밤[栗]
- 2 발 역(發 驛) 동지철도선(東支鐵道線) 각(各) 역(驛), 길장철로(吉長鐵路) 하구대(下九臺)·길림(吉林) 간(間) 각(各) 역(驛), 사조철로(四洮鐵路) 정가둔(鄭家屯)·조남(洮南) 간(間) 및 정가둔(鄭家屯)·통요(通遼) 간(間) 각(各) 역(驛), 창춘(長春), 사평가(四平街), 단동[安東]
- 3 착 역(著 譯) 국선(局線) 각(各) 역(驛: 함경북도선[咸鏡北部線] 및 청진선[淸津線] 각[各] 역[驛]과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 연대선(連帶線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원산(元山) 및 부산(釜山) 역착(驛著) 2할(割) 5푼(分)을 감(減). 기타(其他) 역착(驛著) 1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28(昭和 3)년 2월 18일부터 1929(昭和 4)년 3월 31일까지
- 7 조 건(條 件) 동지철도선(東支鐵道線) 각(各) 역(驛), 창춘(長春), 사평가(四平街) 및 단동역[安東驛] 발(發)에 대하여는 철도국장(鐵道局長)이 이것을 정(定)함